

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운영규정

2003. 11. 13. 제 정

대한축구협회

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운영 규정

- 제1조. 명칭
- 제2조. 목적
- 제3조. 주소
- 제4조. 구성 및 운영
- 제5조. 훈련원장의 임면
- 제6조. 훈련원장의 권한 및 책임
- 제7조. 예산운용
- 제8조. 훈련원의 이용
- 제9조. 보고
- 제10조. 예산안의 제출
- 제11조. 보칙

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이용 세칙

- 제1조. 목적
- 제2조. 사용허가
- 제3조. 사용우선순위
- 제4조.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
- 제5조. 출입제한 및 퇴장
- 제6조. 사용료 및 납부
- 제7조. 손해배상
- 제8조.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
- 제9조. 양도 및 전대의 금지
- 제10조. 위탁관리

부 칙

- 제1조. 시행일

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운영 규정

제1조 (명칭)

본 훈련원의 명칭은 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(이하 '훈련원'으로 한다)으로 하고, 영문으로는 Paju National Football Center(약어 파주 NFC)라 표기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훈련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운영한다.

1. 각급 남·녀 국가대표팀의 훈련
2. 지도자 및 심판의 교육
3. 축구발전에 대한 연구활동
4. 기타 축구발전을 위한 업무

제3조 (주소)

본 훈련원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390번지(우편번호 413-841)에 위치한다.

제4조 (구성 및 운영)

- ① 훈련원은 훈련원장, 사무인원 및 관리인원으로 구성되고,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.
- ② 훈련원은 협회 정관 40조에 의하여 협회의 직속부설기관으로 운영된다.

제5조 (훈련원장의 임면)

훈련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.

제6조 (훈련원장의 권한 및 책임)

훈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.

1. 협회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설사용 승인권

2. 훈련원 근무인원에 대한 아래의 업무감독 및 인사권
 - 가. 용역인원의 선발 및 임면에 관한 추천 사항
 - 나. 근무 인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
 - 다. 근무인원에 대한 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
 - 라. 근무인원에 대한 고과평정에 관한 사항
3. 훈련원 관리, 시설제공, 안전운용에 관한 책임
4. 기타 훈련원 발전에 대한 건의 사항

제7조 (예산운용)

- ① 훈련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무처가 관리하되, 집행은 전무이사의 통제하에 훈련원장이 한다.
- ② 시설관리 및 운영의 긴급지출을 위한 경비(일용품, 소모품, 수리비)는 훈련원장 책임하에 선집행하고 후 결산보고한다.
- ③ 상기 ②항을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가 인정하는 일정액 운용금을 상시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8조 (훈련원의 이용)

- ① 훈련원의 이용은 각급 남·녀 국가대표팀, 지도자 및 심판, 축구관련 각종 교육 세미나 및 연구활동, 기타 축구협회가 인정하는 범위로 한다
- ② 훈련원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 별지 1에 준한다.

제9조 (보고)

훈련원장은 연2회(반기기준) 훈련원 운영에 대한 정기보고를 하며, 필요시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.

제10조 (예산안의 제출)

- ① 훈련원장은 연간 예산(안)을 작성하여 결산 이사회 3주전 사무처에 제출한다.

제11조 (보칙)

파주 축구국가대표 훈련원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처무규정에 따른다.

별지 1 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이용 세칙

[별지 1]

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이용 세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파주 축구 국가대표 훈련원 시설(축구장, 본관 및 관련 부속시설)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용허가)

- ① 훈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훈련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
- ② 훈련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 (사용우선순위)

훈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른다.

1. 국가대표팀 훈련
2. 상비군 및 협회가 인정하는 팀들의 훈련
3. 협회주관대회
 - 가.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및 경기
 - 나. 청소년/유소년 대회 및 경기
 - 다. 기타 파주시, 생활축구협회의회의 요청시
4. 교육 및 연구의 목적

제4조 (사용허가취소 및 정지)

훈련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.

1. 국가대표팀 훈련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 때

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
3. 시설관리 및 잔디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 때
4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
5. 시설의 개·보수시
6.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
7. 비공개 훈련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
8. 기타 훈련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

제5조 (출입제한 및 퇴장)

훈련원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입제한 및 퇴장을 시킬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에 유해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
2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
3.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한 자
4. 기타 출입제한 또는 퇴장시킬 사유가 있는 자

제6조 (사용료 및 납부)

- ① 훈련원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② 사용료는 이용신청서와 함께 훈련원에 납부한다.

제7조 (손해배상)

-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훈련원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

제8조 (사용자의 시설물 설치)

-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훈련원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-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훈련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만일,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9조 (양도 및 전대의 금지)

- ① 본 규정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훈련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.

제10조 (위탁관리)

훈련원장은 훈련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, 단체 및 개인에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